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2021-29호 2021년 2월 15일(월)	시 여수시 보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55호	여수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7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1-78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44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1-45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9
○ 여수시 공고	제2021-466호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1-48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수동 B1 B2 블럭)	14
○ 여수시 공고	제2021-493호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57
○ 여수시 공고	제2021-50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21-503호	방치물 제거 공고	139

기 타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1-55호

여수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87	6	국지도로	211	소1-57 서교동 718대	소2-298 서교동 353대	일반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3	87	6	국지도로	113	소1-57 서교동 718대	소로3-76 서교동 738-1대	일반도로		여고-33호 95.06.22	미집행구간의 실효

2.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3.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4)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 2021 - 76 호

공유수면(구거)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1 - 7

2. 허가일자: 2021년 2월 15일

3. 점 · 사용의 장소: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433번지

4. 점 · 사용의 면적: 일시 : 14㎡

5. 점 · 사용의 목적: 농지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 사용

6. 점 · 사용의 기간: 2021. 2. 15. ~ 2026. 2. 14.

7. 점 · 사용허가를 받은 자: 김*천

여수시 고시 제2021 - 7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65-2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79 (웅천동)	20210215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040-3, 1040-6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곡1길 13	2021021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41		20210215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03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41	20210215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여수시 공고 제2021-44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여서동 43-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사업

나. 명 칭 : 여서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242㎡(도로)

나. 규 모 : L=44m, B=25m, L=76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2020. 2. 6.(실시계획인가고시일)

나. 공사완료일 : 2021. 1.1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여수시장		생년월일
	주소	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전화번호: 061-659-511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17-83-00216
	소재지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여서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목적	도로확장을 통한 우회전차로 확보로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				
사업위치	여수시 여서동 43-10번지 일원		사업면적		242㎡
시행방법	공공개발사업		시행기간		2020. 2. 6.~2021. 3.3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계	잡	대지	도
	면적	242	1	99	142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계	도로		
	면적	242	242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대로3-8호선 L=44m, B=25m	중로3-5호선 L=76m, B=12m		
소요사업비	105백만원		공사완료일		2021. 1.19.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 수 시 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시 공고 제2021-45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덕충동 1840-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420)사업

나. 명 칭 : 충민사 앞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732㎡(도로)

나. 규 모 : L=85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2019. 4.18.(실시계획인가고시일)

나. 공사완료일 : 2021. 1. 4.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여수시장		생년월일
	주소	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전화번호: 061-659-511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17-83-00216
	소재지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충민사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위치	여수시 덕충동 1840-2번지 일원		사업면적		732㎡
시행방법	공공개발사업		시행기간		2019. 4.18.~2021. 1. 4.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계	대지	답	도
	면적	732	5	175	552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계	도로		
	면적	732	732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L=85m, B=8m			
소요사업비	383백만원		공사완료일		2021. 1. 4.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 수 시 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수도사업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자 같은 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2021. 5.(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23.12.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여수시 일반수도사업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전남 여수시 돌산읍, 남산동 일원	○면적 및 규모 - 배수지 V=3,000㎥, 가압장 3개소(상·하동, 모장, 도실) - 송·배수관로 D400~300㎜, L=4.50㎞(관매달기 0.46㎞)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여수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여수시 상수도과 / 여수시 여문2로 124	2021. 2.. ~2021. 2. .(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0. 2. 15.~2020. 3. 1.(14일간)

○ 제출방법: 서면에 의한 의견서 제출

4. 출입내용

사 업 명	출입기간	출입장소
여수 돌산지역 급수안정화 대책사업	사업기간 중(일출 후~일몰 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내

5.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061-659-4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돌산읍 우두리	504-5	전	6,116	6,116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102동 9**호 (돌산1차청솔아파트)	김창*				
2	돌산읍 우두리	504-47	임야	760	14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50-1, 대연하이츠빌-4**	강춘*				
3	돌산읍 우두리	산161-2	임야	402	35	여수시 교동 3**	최기*				
4	돌산읍 우두리	산161-4	임야	259	12	여수시 교동 3**	최기*				
5	돌산읍 우두리	산172-25	임야	1,488	2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2	윤방*				
6	돌산읍 우두리	산174-14	도로	1,976	83	-	국토 교통부				
7	돌산읍 우두리	산174-15	임야	158	117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6**	양강*				
8	돌산읍 우두리	산174-34	도로	695	261	-	국토 교통부				
9	돌산읍 평사리	766-4	수도 용지	2,321	572	-	여수시				
10	돌산읍 평사리	산554-5	도로	1,885	5	-	여수시				
11	돌산읍 평사리	산554	임야	19,937	8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1, 강남아파트 1-4**	조광*				
12	돌산읍 우두리	504-75	도로	672	643	여수시	여수시				
계				36,669	8,082						

여수시 공고 제2021- 48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공동지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1.2.15.(월) ~ 2021.2.21.(일)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여수 문수동 B1, B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공동지정)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부영주택 대표 최 양 환 ☏ 02-3774-5500

다.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부영주택 대표 최 양 환 ☏ 02-3774-5500

라. 설 계 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6, 신양빌딩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양 상 훈 ☏ 062-234-1100

마. 사업개요

구 분	B1 블럭	B2 블럭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0, 44번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55-1번지
대 지 면 적	7,989.00㎡	7,386.00㎡
연 면 적	23,454.3750㎡	20,849.7913㎡
규 모	지하2층 / 지상15층 / 2동	지하2층 / 지상13~15층 / 2동
세 대 수	148세대	140세대
공 사 기 간	2021. 5. 1 ~ 2023. 4. 30.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사업계획승인일	2020. 10. 12.	

바. 사 업 비

구 분	합 계	B1 블럭	B2 블럭
총 사 업 비	72,640,000,000	37,360,000,000	35,280,000,000
총 공 사 비	38,673,427,000	19,854,782,000	18,818,645,000
대 지 비	10,762,524,000	5,592,352,000	5,170,172,000

가)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34,303,507,000원**

나) 타법 감리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비 : 4,369,920,000원

※ 간접비·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 대상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기준 : 900,620,529원(감리대상공사비의 2.62544739%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873,601,913원(감리대가기준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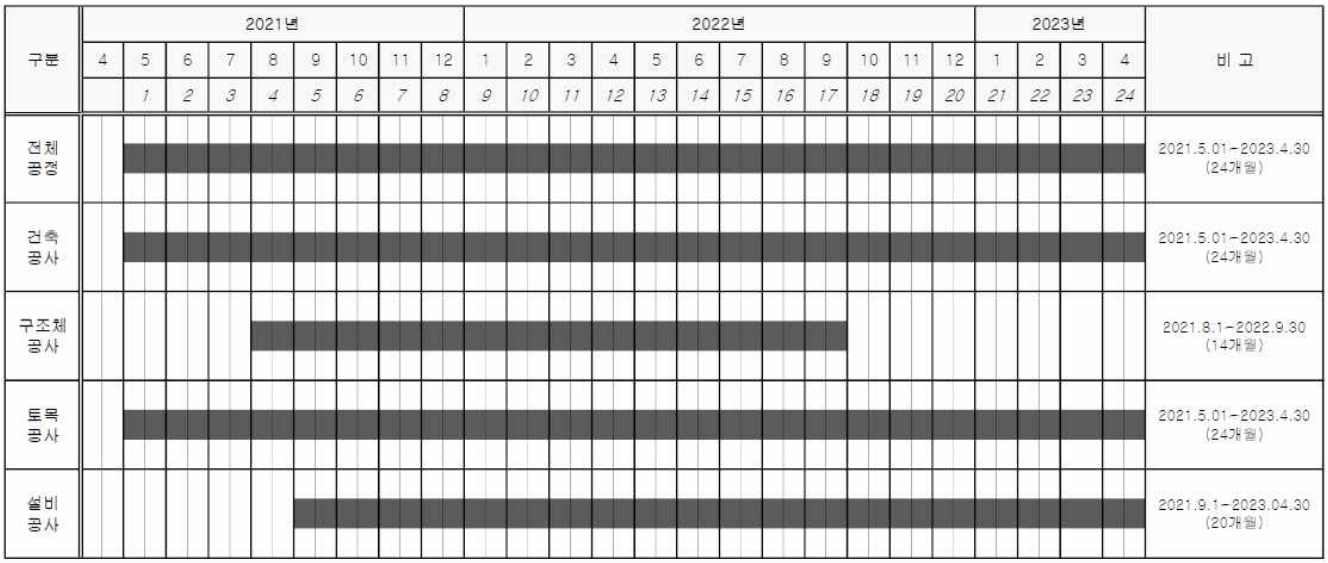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1. 02. 22.(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1. 02. 24.(수) 12: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1. 02. 24.(수) 14: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7.2.) 제10조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

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추첨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1. 02. 26.(금) 09:00 ~ 2021. 03. 03.(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1층 허가민원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 대조필 필히 날인)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1. 03. 05.(금) 09:00 ~ 2021. 03. 09.(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 1층 허가민원과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 **<u>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u>**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 함.

바. 유의사항

1)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7.2.)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7.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u>모집공고일</u>**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u>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u>**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u>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u>**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 (1점)을 부여 함.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 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

가 하므로 **<u>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u>**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7.2.)」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 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4)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등록증(감리전문회사등록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u>※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u>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7.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8) 업무중첩도 관련 :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

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0)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3) 기타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 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u>첨부 시 실격처리 함.</u>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

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토목 2차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함.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 비평가 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체가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이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하여 산출한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 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481호, 2020.7.2.)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너.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

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머.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식

2. 총공사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분야	접수번호
건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여수 문수동 B1, B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021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회사)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Ⅰ. 총괄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	평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감점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계</td><td>40</td><td>◦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d></td><td></td></tr>
<tr><td>(1) 재 무
상 태
건실도</td><td>5</td><td>○ 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5.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
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등급)</td></tr>
<tr><td rowspan="3">4.2</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3.4</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
는 등급)</td></tr>
<tr><td>B+, B0, 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
준하는 등급)</td></tr>
</table>
</td><td></td><td></td></tr>
</table>

산출근거				
(2)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 감리원 배치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6)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table>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td></tr>
<tr><td rowspan="4">(7) 가점</td><td>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
리원
등급
상향</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u>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u>

・평가방법

<table>
<tr><td>구분</td><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td>2,000세대
이상</td></tr>
<tr><td>1명</td><td>1.0점</td><td>0.7점</td><td>0.5점</td></tr>
<tr><td>2명</td><td>1.0점</td><td>1.0점</td><td>0.7점</td></tr>
<tr><td>3명
이상</td><td>1.0점</td><td>1.0점</td><td>1.0점</td></tr>
</table>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1)
지역
가점</td><td>-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
<tr><td>배점</td><td>주택건설지역</td></tr>
<tr><td>1</td><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tr>
</table></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인정</td></tr>
<tr><td>(1)
설계
용역
수행
가점</td><td>-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td><td></td><td></td></tr>
</table>

		0.1점		
	산출근거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 기간 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적·부) 업무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		

		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	---	---	---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감리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계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 등급 :		
(나)경력 및 실적	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u>5년 이상</u>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라)자격 가점 |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마)감점 | (-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 근거			
	(-2) 행정 제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산출 근거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 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나-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계</td><td>9</td><td>·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등급</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3">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특급건설기술자</td><td>고급건설기술자</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2</td><td>1.8</td><td>1.6</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 colspan="2">2</td><td>1.8</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tr>
<tr><td colspan="3">2</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td><td colspan="2"></td></tr>
<tr><td>(나)경력 및 실적</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td><td></td><td></td></tr>
</table>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h>공사규모</th><th colspan="4">점 수</th></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6년 이상</td><td>6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6.3</td><td>5.6</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 colspan="2">6.3</td></tr>
</table>

산출근거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나-3. 비상주감리원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계</td><td>6</td><td>·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등급 :</td></tr>
<tr><td>(나)경력
및실적</td><td>4</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5년이상</td><td>5년 미만</td></tr><tr><td>배 점</td><td>4점</td><td>2.5점</td><td>1점</td></tr></table>※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td></tr>
<tr><td>(다)감점</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able>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 근거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6>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2021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착공일	준공 (예정)일	주택건설 공사	건축공사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등급	평점
	사업명	기간					
총괄감리원							
	소 계				일년		
분야별감리원(2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소 계				일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 급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특급																																		전반기
		○○○	특급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별지 제1호 서식]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여수문수동 B1,B2블럭 공동지정)

현장명 : 여수문수동 B1,B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단위:천원)

구 분			전 체	건축감리대상	감리제외	전기감리대상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929,314	4,929,314	-	-	-
		건축공사	22,707,885	22,707,885	-	-	-
		기계설비공사	4,560,373	4,560,373	-	-	-
		전기공사	2,000,962	-	-	2,000,962	-
		정보통신공사	1,209,704	-	-	-	1,209,704
		소방설비공사	882,913	-	-	-	882,913
		소 계	36,291,151	32,197,572	-	2,000,962	2,092,617
	일반관리비		1,488,924	1,316,210	-	84,868	87,846
	이 윤		893,352	789,725	-	50,920	52,707
	소 계		**38,673,427**	**34,303,507**	-	**2,136,750**	**2,233,170**
간접비	설계비		832,965	-	832,965	-	-
	감리비		1,189,951	-	1,189,951	-	-
	일반분양시설 경비		5,491,625	-	5,491,625	-	-
	분담금 및 부담금		2,522,696	-	2,522,696	-	-
	보 상 비		-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0,786,909	-	10,786,909	-	-
	소 계		**20,824,146**	-	**20,824,146**	-	-
대 지 비			**10,762,524**	-	**10,762,524**	-	-
부가가치세액			**2,379,903**	-	**2,379,903**	-	-
총 사 업 비			**72,640,000**	**34,303,507**	**33,966,573**	**2,136,750**	**2,233,170**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에 따름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전기,수도,지역난방),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현장명 : 여수문수동 B1,B2블럭 푸영아파트 신축공사 (단위 : 천원)

구분	분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전기감리대상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1개공종)	토공사	2,023,780	2,023,780	-	-	-
		흙막이공사	1,222,467	1,222,467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옹벽공사	52,209	52,209	-	-	-
		석축공사	-	-	-	-	-
		우,오수공사	25,524	25,524	-	-	-
		공동구공사	23,204	23,204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801	5,801	-	-	-
		도로포장공사	31,712	31,712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9,392	29,392	-	-	-
		정화조시설공사	11,602	11,602	-	-	-
		조경공사	1,049,210	1,049,210	-	-	-
		부대시설공사	464,413	464,413	-	-	-
		소 계	4,929,314	4,929,314	-	-	-
	건 축 (21개공종)	공통가설공사	471,429	471,429	-	-	-
		가시설물공사	214,250	214,250	-	-	-
		지정 및 기초공사	714,298	714,298	-	-	-
		철골공사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11,684,026	11,684,026	-	-	-
		용접공사	-	-	-	-	-
		조적공사	421,927	421,927	-	-	-
		미장공사	435,463	435,463	-	-	-
		단열공사	268,781	268,781	-	-	-
		방수,방습공사	241,922	241,922	-	-	-
		목공사	674,078	674,078	-	-	-
		가구공사	1,329,206	1,329,206	-	-	-
		금속공사	975,730	975,730	-	-	-
		지붕 및 홈통공사	90,883	90,883	-	-	-
		창호공사	1,683,067	1,683,067	-	-	-
		유리공사	453,252	453,252	-	-	-
		타일공사	957,554	957,554	-	-	-
		돌공사	190,660	190,660	-	-	-
		도장공사	310,161	310,161	-	-	-
		도배공사	332,591	332,591	-	-	-
		수장공사	681,039	681,039	-	-	-
		주방용구공사	174,031	174,031	-	-	-
		잡공사	404,137	404,137	-	-	-
		소 계	22,707,886	22,707,886	-	-	-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1,639,753	1,639,753	-	-	-
		급탕설비공사	947,113	947,113	-	-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182,152	182,152	-	-	-
		위생기구공사	116,020	116,020	-	-	-
		냉공기기계공사	638,885	638,885	-	-	-
		난방설비공사	160,882	160,882	-	-	-
		가스설비공사	150,827	150,827	-	-	-
		자동제어설비공사	196,075	196,075	-	-	-
		특수설비공사	528,666	528,666	-	-	-
		소 계	4,560,373	4,560,373	-	-	-
	전기(15개 공사)		2,000,962	-	-	2,000,962	-
	정보통신(13개 공사)		1,209,704	-	-	-	1,209,704
	소방설비(2개 공사)		882,913	-	-	-	882,913
일반관리비			1,488,924	1,316,210	-	84,868	87,846
이 윤			893,352	789,725	-	50,920	52,707
총 공 사 비 계			38,673,427	34,303,607	-	2,136,760	2,233,170

1 페이지
2 페이지

여수시 공고 제2021-493호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초판)」 위탁의료기관 모집 규정에 따라 여수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15.(월) ~
3. 모집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 모집대상 :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위탁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 접종백신 :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 운영기간 : 백신 공급 시기에 따라 결정
   - 지원비용 : 시행비(질병관리청 추후 공고 예정)

   ※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의 의료진 자체 접종 시 시행비 제외

   - 지정기준 :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확보, 이상반응 대처, 인력 확보, 접종 시행능력 등

   ※ [붙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참조

4.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방법

   가. 방문점검 : 장소, 공간, 인력, 백신보관관리 물품 등 확인

   나. 교육수료 :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시스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https://covidedu.kohi.or.kr/index.do)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

   ※ 예진의사 및 접종 간호인력 모두 반드시 교육 이수

   다. 전자서류 제출 : 교육수료증, 통장사본(기 제출된 통장 이용 시 제외),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전자서류 제출

* (접속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

라. 위탁계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5.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실시 안내

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 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사업 내용 숙지

나. 접종 대상자 예진 시 접종대상자 건강상태, 접종 금기 및 제외대상자 확인, 코로나19 백신 특성, 접종 시 이상반응 등에 대해 설명

다.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예방접종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라. 예방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마.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은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차.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됨

아. 사업 참여 철회 시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시행하지 않음' 으로 수정 제출

자. 폐업 전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반드시 완료(폐업 이후 전산등록 누락 전종기록에 대한 비용청구 불가, 폐업 전 잔여 백신 반납 처리)

카. 위탁 계약조건 미 준수 시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참여 해지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관리팀 (☎061-659-4272)

붙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1부.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기준

※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및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정기준 >

○ **(참여 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백신보관·관리, 공간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지정 예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행 경험이 풍부한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에서 참여하도록 권고

- 기존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 수료가 선행되어야 함

**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 수료가 선행되어야 함

○ **(백신보관·관리)** ①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 ④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백신 전용 냉장고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다음의 2가지 기능을 갖춘 장비를 반드시 설치

①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하여,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②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포함) 냉장고의 설정온도(2~8℃) 일탈 즉시 접종기관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

○ **(인력 확보)** ① 예진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 등 확보

* (예진의사, 시행의사 및 의료인력) 예진, 접종,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 수행 / (간호인력 등) 접수,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 수행(백신 공급, 오접종 예방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을 위해 실시간 등록 필요)

○ **(시설 확보)**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 **(이상반응 대처)**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필수**,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여수시 공고 제2021-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 2. 15.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붙임 참조)
2. 공고대상 : 221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1. (15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T. 061-659-5641~5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목록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서병인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서상갑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봉석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강석연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서병륜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서상곤 외 5인 (소유자 총 6명)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호명동 산273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6,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진남새마을회 (대표 서원평)	생년월일(등록번호) 3612-*****	
	주소 여수시 상암1길 **-* (상암동)	취득연월일 1918년 1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황 몽 길		
	주소 여천군 쌍봉면 여천리 170번지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91-1번지	전	754㎡
	②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96-2번지	전	1,041㎡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황 수 천	생년월일(등록번호) 1963. *. **.	
	주소 여수시 망마로 82-10, **동 ***호 (신기동, 대림산업제2사택)	취득연월일 1982년 12월 19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만 암		
	주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두라리 337-10번지	지목 임야	면적 4,13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윤 영 남	생년월일(등록번호) 1945. *. *.	
	주소 여수시 문수북5길 **-*(문수동)	취득연월일 1964년 3월 2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윤 서 행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두라리 산14-5번지	지목 임야	면적 79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윤 영 남	생년월일(등록번호) 1945. *. *.	
	주소 여수시 문수북5길 **-*(문수동)	취득연월일 1964년 9월 29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광 선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도 상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두라리 산16-2번지	지목 임야	면적 49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근 용	생년월일(등록번호) 1951. *. **.	
	주소 여수시 남면 대두해안길 *	취득연월일 1974년 8월 1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광 선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도 상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두라리 산40번지	지목 임야	면적 1,38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근 용	생년월일(등록번호) 1951. *. **.	
	주소 여수시 남면 대두해안길 *	취득연월일 1974년 8월 1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윤 평 준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송 인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159번지	지목 대	면적 17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은 덕	생년월일(등록번호) 1958. **. **.	
	주소 여수시 광무한재길 ** (광무동)	취득연월일 1988년 9월 16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영 삼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형 배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64번지	지목 대	면적 180.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이 태 옥	생년월일(등록번호) 1939.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월항윗길 *	취득연월일 1993년 9월 3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임 춘 근	
	주소 여천군 화정면 제도리 233번지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164-3번지	전	2,460㎡
	②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164-5번지	전	60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용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41. **. **.
	주소 여수시 버드나무길 * (서교동)	취득연월일 1988년 3월 13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전인석 (김인석)		
	주소 여천군 화정면 제도리 240번지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186번지	지목 답	면적 13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석 현	생년월일(등록번호) 1978. *. **.	
	주소 여수시 봉계대곡길 50, ***동 ***호 (봉계동, 아주타운)	취득연월일 1994년 1월 23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배 정 오		
	주소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109번지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95-4번지	지목 전	면적 16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배 경 선	생년월일(등록번호) 1963. *. *.	
	주소 여수시 신기남*길 * (신기동)	취득연월일 1993년 4월 22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13. ~ 3. 1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3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인 석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근 수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산85번지	지목 임야	면적 1,98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석 현	생년월일(등록번호) 1978. *. **.	
	주소 여수시 봉계대곡길 50, ***동 ***호 (봉계동, 아주타운)	취득연월일 1994년 1월 23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찬 옥		
	주소 여천군 화정면 여자리 688번지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677번지	지목 전	면적 12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최 형 호	생년월일(등록번호) 1960.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	취득연월일 1995년 1월 31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5. ~ 3. 5.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웅 래		
	주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307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239-2번지	지목 대	면적 10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순 덕	생년월일(등록번호) 1924. **.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217번길 *-** (계림동)	취득연월일 1991년 8월 2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신원원조		
	주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09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513번지	지목 임야	면적 59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주 형 미	생년월일(등록번호) 1984. *. *.	
	주소 경기도 광명시 덕단이로 17, *동 ***호 (광명동, 뉴월드)	취득연월일 1987년 3월 17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신성석수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31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96-1번지	지목 전	면적 22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용 규	생년월일(등록번호) 1958.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	취득연월일 1994년 7월 1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 순 지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559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558-1번지	지목 전	면적(㎡) 84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주 충 배	생년월일(등록번호) 1939.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작금길 **-*	취득연월일 1988년 8월 2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연 수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25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산227-4번지	지목 임야	면적 3,76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용 규	생년월일(등록번호) 1958.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	취득연월일 1973년 12월 11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석 인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750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0-1번지	지목 전	면적 1,34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철 신	생년월일(등록번호) 1951.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	취득연월일 1973년 12월 17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임 병 순		
	주소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413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산245-8번지	지목 임야	면적 2,18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채 욱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	취득연월일 1990년 3월 18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임우점수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639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028-2번지	지목 대	면적 28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종 학	생년월일(등록번호) 1966.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천2길 **	취득연월일 1974년 7월 20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치 경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044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044번지	지목 대	면적(㎡) 24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조 길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3.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천2길 **	취득연월일 1980년 2월 4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한 성 권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33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045-7번지	지목 대	면적 13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조 정 덕	생년월일(등록번호) 1954.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취득연월일 1980년 2월 4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원 식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84-3번지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13번지	대	119㎡
	②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14번지	대	15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철 학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	취득연월일 1992년 12월 3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기 인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10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20-5번지	임야	4,458㎡
	②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20-6번지	임야	4,671㎡
	③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20-7번지	임야	7,66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본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36. **. **.
	주소 여수시 광무한재길 **-*	취득연월일 1984년 2월 2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학 배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58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232번지	지목 임야	면적 1884㎡ (지분 1/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주 춘 문	생년월일(등록번호) 1961. *. *.	
	주소 여수시 돌산읍 봉양길 **-**	취득연월일 1995년 5월 28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최 동 연		
	주소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145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892-3번지	지목 답	면적 1,891㎡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최 원 용	생년월일(등록번호) 1949. *.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중동, 미리내마을)	취득연월일 1985년 1월 1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영 수		
	주소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76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870-2번지	지목 전	면적 1,39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한 철	생년월일(등록번호) 1942. **. **.	
	주소 여수시 율촌면 상평길 **	취득연월일 1965년 2월 1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서 기 화		
	주소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544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917-2번지	지목 답	면적 2,99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서 경 원	생년월일(등록번호) 1975. **.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동 ***호(중흥에스-클래스1단지아파트)	취득연월일 1995년 6월 10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강 정 오		
	주소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26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24번지	지목 전	면적 2,09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강 윤 화	생년월일(등록번호) 1973.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	취득연월일 1984년 1월 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강 재 화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강 귀 철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108번지	지목 묘지	면적(㎡) 9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강 송 평	생년월일(등록번호) 1957.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풀성골길 *	취득연월일 1995년 4월 2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문 병 석		
	주소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530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355번지	지목 전	면적 1,43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문 미 용	생년월일(등록번호) 1971. *. **.	
	주소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동 ****호 (죽림부영1차)	취득연월일 1985년 6월 2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남본길동		
	주소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453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91번지	지목 답	면적 519㎡ (지분 1/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삼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	취득연월일 1971년 7월 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문원장로		
	주소 여수시 화양면 개도리 528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91번지	지목 답	면적 519㎡ (지분 1/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삼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	취득연월일 1971년 7월 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송 찬 두		
	주소 여천군 화양면 이천리 47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95번지	지목 대	면적 69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임 삼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	취득연월일 1994년 3월 6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이 홍 우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영 준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00-2번지	지목 임야	면적(㎡) 1,28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정 장 호	생년월일(등록번호) 1961. **. **.	
	주소 여수시 구봉길 79, ***동 ***호 (국동, 국동라인1차아파트)	취득연월일 년 월 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현 래		
	주소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968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005번지	지목 전	면적 93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정 규	생년월일(등록번호) 1952. *.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02, ***동 ****호(소담동, 새샘마을6단지)	취득연월일 1970년 4월 1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오 천	
	주소 여천군 화양면 옥적리 1676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736-8번지	전	674㎡
	②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산517번지	임야	89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정 희 남	생년월일(등록번호) 1964.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	취득연월일 1976년 8월 1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이 태 연		
	주소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29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2094-13번지	지목 답	면적 147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이 영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55. *.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75, ***동 ****호(돈암동, 돈암코오롱하늘채)	취득연월일 1986년 5월 24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여 근		
	주소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1465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445번지	지목 임야	면적 654㎡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영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69. *.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18, ***동 ***호 (선원동, 남양아파트)	취득연월일 1981년 10월 12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이 형 익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송 원 표		
	주소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723번지	대	205㎡
	②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724번지	대	16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송 갑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55. *.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동 ***호(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취득연월일 1990년 2월 14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손 순 명		
	주소 여천군 화양면 화동리 895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1047번지	지목 전	면적 1,30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순 중	생년월일(등록번호) 1959. *.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 (관동동)	취득연월일 1989년 7월 2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홍 일		
	주소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835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산70-1번지	지목 임야	면적(㎡) 397㎡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용 두	생년월일(등록번호) 1934.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화동로 ***-***	취득연월일 1959년 1월 27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학 래		
	주소 여천군 화양면 서촌리 49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252번지	지목 답	면적 1557㎡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수 만	생년월일(등록번호) 1951. *. *.	
	주소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 **-*	취득연월일 1986년 10월 2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순 풍		
	주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285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7-1번지	지목 전	면적 45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재 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5. *. **.	
	주소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취득연월일 1978년 11월 2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순 풍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준 호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306-4번지	지목 전	면적(㎡) 79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재 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5. *. **.	
	주소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취득연월일 1978년 11월 2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순 풍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준 호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444-36번지	지목 임야	면적(㎡) 1,72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재 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5. *. **.	
	주소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취득연월일 1978년 11월 2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순 풍		
	주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285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준 호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61-1번지	지목 임야	면적(㎡) 1,38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재 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5. *. **.	
	주소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취득연월일 1978년 11월 2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오 인 효	
	주소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788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남면 화태리 149-2번지	전	1,448㎡
	②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28번지	임야	2,182㎡
	③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28-2번지	임야	5,05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연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69. *. **.
	주소 여수시 신월2길 11, ***동 ***호 (신월동, 신월코아루아파트)	취득연월일 1972년 1월 2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한 규		
	주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56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309-5번지	지목 전	면적 1785㎡ (지분 33/14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도 성	생년월일(등록번호) 1938. *. **.	
	주소 여수시 남면 달밭금길 **	취득연월일 1976년 4월 13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임 규		
	주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267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318-5번지	지목 임야	면적(㎡) 14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천 수	생년월일(등록번호) 1958. *. **.	
	주소 여수시 남면 마족길 *-**	취득연월일 1947년 2월 10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이 태 윤		
	주소 여천군 남면 화태리 506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30번지	지목 임야	면적 6,248㎡ (지분 459/615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이 동 기	생년월일(등록번호) 1938. *. *.	
	주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묘두길 ***-*	취득연월일 1980년 4월 5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황 병 규		
	주소 여수시 충무동 136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74-4번지	지목 임야	면적 2,047㎡ (지분 700/387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윤 춘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41. *. *.	
	주소 여수시 남면 달밭금길 **-*	취득연월일 1974년 12월 27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연 수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96번지	지목 전	면적 1,98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정 경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75. *.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130, **동 ***호 (금호동, 초원아파트)	취득연월일 1995년 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장 기 삼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용 우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20번지	지목 전	면적(㎡) 731㎡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정 정 희	생년월일(등록번호) 1976. *.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56, ***동 ****호(연향동, 동부아파트)	취득연월일 1984년 2월 4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최 상 우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991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22-3번지	전	456㎡ (지분 1/5)
	②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번지	임야	30,843㎡ (지분 1/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최 일 탁	생년월일(등록번호) 1947. *. *.
	주소 여수시 고소2길 **-* (고소동)	취득연월일 1985년 2월 20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개 도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964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715번지	전	813㎡
	②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715-2번지	전	401㎡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희 준	생년월일(등록번호) 1979. *. **.
	주소 여수시 수정4길 **-*	취득연월일 1993년 1월 23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심 룡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908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773번지	지목 전	면적 82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정 용 우	생년월일(등록번호) 1938.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	취득연월일 1995년 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장 창 옥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966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966번지	지목 대	면적 241㎡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정 문	생년월일(등록번호) 1948.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	취득연월일 1994년 2월 1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쌍 조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02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17번지	지목 대	면적 132㎡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최 봉 근	생년월일(등록번호) 1945.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여산3길 *	취득연월일 1972년 4월 1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장 경 련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22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37번지	전	1,362㎡
	②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37-1번지	잡종지	15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장 형 택	생년월일(등록번호) 1964. *.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0번길 109, ***동 ***호 (온천동, 대가하이츠)	취득연월일 1995년 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최 정 순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최 상 우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88번지	지목 임야	면적(㎡) 2,436㎡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최 일 탁	생년월일(등록번호) 1947. *. *.	
	주소 여수시 고소2길 **-*(고소동)	취득연월일 1985년 2월 20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광 천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25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159번지	지목 전	면적(㎡) 747㎡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조 덕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52.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	취득연월일 1980년 4월 16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이 도 상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163-2번지	지목 임야	면적(㎡) 1,59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조 덕 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952. **. *.	
	주소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	취득연월일 1978년 9월 20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최 상 선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991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273-1번지	지목 전	면적 44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윤 미	생년월일(등록번호) 1972. *.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36, ***동 ***호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취득연월일 1973년 9월 1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경 문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00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김 사 용		
	주소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29-4번지	전	188㎡
	②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63번지	임야	1,785㎡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김 옥 철	생년월일(등록번호) 1965. *. **.	
	주소 여수시 장군산길 42, ***동 ***호 (오림동, 부영아파트3단지)	취득연월일 1995년 2월 4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오 인 준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16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59-14번지	지목 전	면적 3,59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오 영 운	생년월일(등록번호) 1958. *.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57, ***동 ****호(화장동, 주공3단지아파트)	취득연월일 1988년 6월 18일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사원경련	
	주소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22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68-5번지	전	466㎡
	②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68-12번지	전	198㎡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장 형 택	생년월일(등록번호) 1964. *.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0번길 109, ***동 ***호(온천동, 대가하이츠)	취득연월일 1995년 1월 31일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정 만 복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득 수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65번지	지목 임야	면적(㎡) 1,289㎡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승 현	생년월일(등록번호) 1978. *. **.	
	주소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취득연월일 1990년 1월 27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해전재석		
	주소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 득 수		
	주소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68번지	지목 임야	면적(㎡) 6,84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 승 현	생년월일(등록번호) 1978. *. **.	
	주소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취득연월일 1990년 1월 27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권 명 암		
	주소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263		
부동산	소재지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167번지	지목 전	면적 253㎡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강 규 호	생년월일(등록번호) 1954. *. **.	
	주소 여수시 웅천남8로 23, ***동 ***호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 2단지)	취득연월일 1982년 1월 25일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1. 1. 22. ~ 3. 22.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지적・종합민원・시민봉사과 등)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사 실 조 사
	↓
← 결 과 통 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여수시 공고 제2021-503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바지선)이 통항에 방해가 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2. 15. ~ 3. 2.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컨테이너(샌드위치 판넬)**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제거대상 물건 내용

관리번호	명칭 및 제원	방치장소
2021-2	컨테이너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항 선착장 인근 (월호도 남서방 약 1.5해리 해상 발견)

[별지 제8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1-503호

무 단 방 치 물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월호동 남서방 약 1.5해리 해상		
물 건 제 원	컨테이너(샌드위치 판넬)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1-2호
제거 예정일자	2021년 3월 2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물 사진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1)